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증명책임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립함과 아울러 API의 성과성을 부정한 대 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2026.08.25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리뷰를 공중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벤처기업(피고)과 리뷰 제공을 포함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기업(원고) 사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성과' 무단사용 여부[이하 “(파)목 부정경쟁행위”]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협약 과정에서 제공받은 '피고의 리뷰 데이터와 조회용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경쟁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이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선례로서 사실상 규범력을 갖게 된다면 성과 인정의 하한선이 무너져 보호 가치가 없는 대상까지 무분별하게 보호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이와 더불어 기술적·법리적으로 치밀한 주장을 펼친 끝에 결국 3년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과 주요 소송수행 전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을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갔고, 원심은 피고가 부각한 구도에 주목한 나머지 피고의 리뷰 데이터와 API의 성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고심에서 이러한 감정적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API, 리뷰 데이터의 기술적 실체와 법리에 기초하여 정면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피고의 조회용 API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표준적 접속 규약(이른바 열쇠와 그 사용설명서)에 불과하고 원고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답변이 누적되어 제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 구조상 원천적으로 API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점, 주간 업무보고와 기획안 등 원시 개발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약 7개월에 걸쳐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원고가 서비스

를 출시할 무렵부터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다는 점, 당시 이미 다른 분야에서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간에 개발하였으니 기술을 탈취하였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깨뜨리고 원고가 피고의 API나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회용 API의 기술적 실체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심이 성과로 인정한 피고의 API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파)목의 규범 체계를 재정립하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자체의 보호는 (차)목에서, 아이디어가 구현된 결과물의 무단사용은 (파)목에서 규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차)목에서 보호가 부정된 공개된 아이디어를 다시 (파)목의 '성과 등'으로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은 그 자체로 판결이유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참고할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공공영역에 속하는 공개된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차)목에서 보호가 부정된 공개된 아이디어를 (파)목에서 성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무단사용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증명책임을 사실상 원고에게 전가함으로써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회용 API에 관하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회 방법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능의 API라면 그 입·출력 인자 등 통상적인 구성요소들이 대체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차)목 판단에서는 API의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면서도 (파)목 판단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이를 성과로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무단사용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라도 원고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사정과 독자 개발의 정황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API와 리뷰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 부정경쟁행위 성립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사건에서 성과 해당 여부와 무단사용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API나 데이터와 같은 무형의 성과를 둘러싼 분쟁에서, 경쟁 서비스가 외형상 유사하다는 사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만으로 무단사용사실이 곧바로 추정될 수는 없고, 이를 주장하는 측이 성과 해당성은 물론 무단사용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한 선례로서 실무적 가치가 큼니다.

아울러 본 판결은 어떤 대상이 (차)목에서 보호가 부정되는 공개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다른 근거 없이 (파)목의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판결이유의 모순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차)목과 (파)목의 규범 체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이 보여준 '기술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증명책임 법리에 기초한 정공법'은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라는 프레임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결정적 해법이 되었습니다.

관련구성원

이병한

변호사

02-316-4208

bhlee@shinkim.com

송종훈

변호사

02-316-2590

johsong@shinkim.com

윤주탁

변호사

02-316-4404

jtyoon@shinkim.com

조현상

변호사

02-316-1911

hscho@shinkim.com